

[번역문]

Alliance Bernstein (Luxembourg) S.à r.l.

유한회사

2-4, rue Eugène Ruppert

L-2453룩셈부르크

R.C. S. LUXEMBOURG B 34 405

2015년 11월 2일

ACMBernstein¹ 의

관 리 규 정

¹ 2016년 2월 5일자로 펀드의 상호가 AB FCP I으로 변경되며, 이 문서 전체에서 이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펀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2010년 12월 17일 법률(“법률”) 제1부에 의거 공동투자펀드(fonds commun de placement)로 설립된 에이씨엠 번스타인(ACMBernstein)(2016년 2월 5일자로 AB FCP I으로 변경됨)(“펀드”)는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공동 소유자(이하 “주주들”이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룩셈부르크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AllianceBernstein (Luxembourg) S.à r.l.(“위탁회사”)가 운용하는 법인화되지 않은 양도가능 유가증권 (이하 “당해 유가증권”이라 한다) 및 기타 자산의 법인화되지 않은 공동지분이다. 독일 및 오스트리아 외의 지역에서, 펀드는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다양한 주식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으며 위탁회사는 부칙에 더 상세히 기술된 것으로, 주식의 자산이 대개 투자될 것이나 특정 판매 및/또는 환매비용구조, 수수료 구조, 헷징 정책 또는 기타 특정한 특징들이 각 클래스에 적용된 한 개 혹은 수 개의 주식 클래스(각각을 “클래스”라 한다)에 연계된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특정 자산 풀 (각각을 “포트폴리오”라 한다)을 펀드 내에 설립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여하한 해당 클래스의 주식을 모집 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그러한 주식의 발행 제조조건 또한 위탁회사가 결정한다. 해당 클래스들에 따르는 권리는 펀드의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Brown Brothers Harriman (Luxembourg) S.C.A.(“보관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펀드의 자산은 위탁회사 및 위탁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기타 여하한 펀드의 자산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펀드의 주식의 취득으로 주주들은 주주들, 위탁회사 및 보관회사 간의 계약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 관리규정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2. 위탁회사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위탁회사가 주주들을 대신하여 운용한다.

위탁회사는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인수, 교환 및 수령, 펀드의 자산에 대한 직, 간접적인 권리 일체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주주들을 대신하여 제6조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펀드를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위탁회사의 이사회는 제6조에 명시된 제한사항 내에서 펀드의 투자정책을 결정한다.

위탁회사의 이사회는 그의 기능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정책을 집행하고 펀드의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하며 주식 판매를 수행할 임원 및/또는 일반사무대리인 및 기타 여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펀드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정보, 자문, 기타 서비스를 구할 수 있다.

위탁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인, 부투자자문인 및 기타 여하한 펀드의 대리인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각 포트폴리오의 효율을 초과하지 않는 펀드의 자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

3. 보관회사

위탁회사는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거 설립된 회사인 **Brown Brothers Harriman (Luxembourg) S.C.A.**를 보관회사로 선임하였다.

보관회사 또는 위탁회사는 상대방에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관회사의 선임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보관회사의 선임을 해지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그러한 해지 후 2개월 이내에 이 관리규정에 따라 현 보관회사의 책임 및 기능을 인수할 새로운 보관회사를 선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신규 보관회사의 선임 중 보관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의 양호보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상기 해지 이후 보관회사의 선임은 그 후 신규 보관회사에 펀드의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

펀드의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은 펀드의 주주를 대신하여 보관회사가 보관한다. 보관회사는, 위탁회사의 인가를 받아, 그 자산의 보관을 은행 및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관회사는, 위탁회사의 인가를 얻어, 보관회사가 정하는 결제이행기관에 대체가능계좌 또는 대체불가능계좌에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회사는 펀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예탁에 대하여 은행의 통상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보관회사는 위탁회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으로부터 지시를 수령하는 즉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

위탁회사 또는 이의 지정 대리인으로부터 지시를 수령하는 즉시 보관회사는 펀드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한다.

보관회사는 법률의 제17조 및 제18조에 기재된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인수한다.

보관회사는 위탁회사와 보관회사 간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되는 비용에 관하여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보수는 자산에 기초한 보수와 건별 보수가 결합된 것이며 매월 지급된다.

4. 포트폴리오

위탁회사는 서로 다른 투자정책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설립할 수 있다.

제 3자에 관해서, 각 포트폴리오는 배타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을 질 의무를 갖는다.

각각의 투자 및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각각의 포트폴리오로 유지될 것이다. 서로 다른 포트폴리오의 자산은 투자설명서에서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정해진 투자정책에 따라서 각각 투자 될 것이다.

여하한 포트폴리오는 위탁회사의 결의 즉시, 이 다음의 제19조에 더 자세하게 설명된 것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5. 투자정책

위탁회사는 위험분산의 원칙에 따라 양도가능 유가증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자산에 주주들의 공동 계정으로 펀드에 납입금을 투자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위탁회사는 포트폴리오별로 투자지침사항을 정하여 투자설명서의 그 지침사항을 공고한다.

펀드는 분산된 범위의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지리적으로 다양한 시장 또는 다양한 산업 또는 부문에서 전세계적인 범위 또는 투자기회를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포트폴리오는 주식 및 채무증권, 단기금융시장상품, 예금, 금융파생상품, 투자펀드의 수익권 또는 주식 및 여하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설명서에서 명시된 기타 여하한 자산종류로 구성된 어떠한 종류의 금융상품에든지 투자 및 노출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펀드가 추가 포트폴리오들을 설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투자기회의 종류를 임의로 결정한다. 또한 위탁회사는 추가 주식 클래스의 발행일을 확정할 권리를 단독으로 갖는다.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금융파생상품의 이용하거나 차입 또는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기타 여하한 수단을 통하여 레버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지침을 구체화하며 해당 지침을 투자설명서에 공시한다.

펀드에 부수적인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언제든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자산은 만기가 12개월 이하인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가 발행 또는 보증한 금융시장증서의 형태로 또는 당좌 또는 예금계정으로 일시적으로 보관될 수 있다.

또한 옵션 및 선물을 이용할 수 있다. 헷징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법 및 증서는 투자설명서(prospectus)에 명시된 투자지침사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각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이용될 수 있다.

6. 투자제한

펀드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위탁회사는 펀드의 각 포트폴리오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달

리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펀드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 (1) 펀드는 주식을 환매하려는 목적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총 차입금액은 해당 포트폴리오의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백투백 대출(back-to-back loan)을 통하여 펀드가 외환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2) 펀드는 (i) 제(1)항에서 언급된 차입 (다만, 저당권설정, 질권설정 또는 담보계약 금액은 해당 포트폴리오의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및/또는 (ii) 선도, 선물 계약 또는 옵션 거래와 관련한 펀드의 증거금 요건 및/또는 (iii)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펀드가 소유하거나 보유한 여하한 유가증권을 채무의 담보물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계약을 체결하거나 여하한 기타 방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 (3) 이 관리규정에 포함된 기타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펀드는 제3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보증인으로써 행위할 수 없다.
- (4) (i) 펀드는 해당 포트폴리오 순자산총액의 10% 이상이 동일 발행인의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당해 동일 발행인의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펀드는 동일 기관에의 예치에 해당 하위펀드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펀드가 포트폴리오 순자산총액의 5% 이상을 투자한 발행인들에 대하여 펀드가 보유한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의 총가치는 투자시점에서 당해 포트폴리오 순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신중한 감독(prudent supervision)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신중한 감독(prudent supervision)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그러한 금융기관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의 개별 한도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이하의 각 한도를 합산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20%를 초과하는

-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양도성 유가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 동일 발행인에의 예치
- 동일 발행인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

- (ii) 상기 10%의 한도는 회원국, 그 지방정부 또는 1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가입한 공공국제기구 또는 여하한 기타 비회원국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에 대하여 35%로 적용된다.
 - (iii) 상기 10%의 투자 한도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신용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법에 의거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공적 감독을 받는 일부 수권 채권에 대해서는 25%까지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상기 채권의 발행대금이 법에 따라 동 채권의 만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청구(claims)를 담보할 수 있고 발행인의 파산시 동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에 우선적으로 충당될 자산에 투자되어야 한다.
- 하위펀드가 단일 발행인이 발행한 전술한 채권에 그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그러한 투자의 총 가액은 그 하위펀드의 자산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 (iv) (ii)호 및 (iii)호에서 언급된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은 본 항에서 규정된 40%의 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다.
 - (v)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그 지방정부당국 또는 1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가입한 공공국제기구 또는 OECD의 여하한 회원국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포트폴리오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펀드는 당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6개의 다른 종목의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한 종목의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이 당해 포트폴리오 순자산총액의 30%이상을 차지하여서는 안된다.

(i)호, (ii)호, 및 (iii)호에 명시된 한도는 합산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i)호, (ii)호, 및 (iii)호에 의거 이루어진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또는 이러한 동일 발행인에의 예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Directive 83/349/EEC² 또는 공인된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정의된 바와 같은 연결 재무제표 작성 목적상 동일 그룹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여기서 명시된 투자 한도 산정시 단일 발행인으로 간주된다.

펀드는 동일 그룹이 발행한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에 누적하여 포트폴

² 통합계정조약(The Treaty on Consolidated Accounts)(OJ L 193, 18.7.1983, p.1) 제54(3)(g)조에 기한 1983년 6월 13일자 제7차 Council Directive 83/349/EEC. Directive는 1994년 계승법(Act of Accession)에 의거 최종 개정됨.

리오 순자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4-1) (i) 투자제한 제(6)항에 명시된 한도를 침해하지 않고 투자제한 제(4)항에 따른 투자제한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포트폴리오 투자방침이 이하 각 호의 요건에 근거하여 금융분야 감독위원회(“CSSF”)가 인가한 특정 주가지수나 채권지수의 구성을 모방(replicate)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및/또는 채권에 대해서는 20%까지 완화될 수 있다.

- 지수의 구성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을 것
- 지수가 참조 대상 시장에 대한 적절한 벤치마크를 대표할 것
-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가 이루어 질 것

(ii) 상기 (i)호에서 정한 투자 한도는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증서의 주요 거래시장인 정규시장 등에서의 예외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5%까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한도는 단일 발행인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5) 펀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포트폴리오를 대리하여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에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가) 정규시장에서 공식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

(나) 규제를 받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에게 인정되고 개방된 회원국의 여타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

(다) 유럽연합 비회원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공식상장이 승인되어 있거나 혹은 규제를 받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에게 인정되고 개방된 유럽연합 비회원국의 여타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 단, 해당 증권거래소나 시장에 대한 선택이 UCITS의 설립증서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함.

(라) 이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최근 발행된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

- 발행 조건상 증권거래소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에게 인정되고 개방된 여타 정규시장에 공식 상장 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 단, 해당 증권거래소나 시장에 대한 선택이 UCITS의 설립증서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그러한 허가가 발행 1년 이내에 보장될 것

(마)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와 예금 보호를 위하여 그 발행자체와 발행인이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1조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금융상품을 제외함):

- 중앙, 지방 또는 행정 당국 또는 회원국의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또는 유럽의 투자은행, 비회원국, 또는 연방 국가(Federal State)의 경우에는 연방을 구성하는 회원국 중 한 국가, 또는 1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상품
 - 상기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명시된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발행 기업이 발행한 상품
 - 유럽공동체 법(Community law)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신중한 감독(prudential supervision)을 받는 단체 또는 CSSF가 유럽공동체 법에서 부여하는 기준과 동등하거나 더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신중한 규칙(prudential rules)에 따르고 이를 준수하는 단체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상품
- CSSF가 승인한 범주에 해당하는 기타 사업체가 발행한 상품. 단, 이러한 상품에 대한 투자가 상기 첫번째, 두번째 또는 세번째 항에서 정한 요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그 발행인이 EUR 10,000,000을 초과하는 자본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Directive 78/660/EEC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간행하며, 그룹의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그룹사(1개 혹은 수개의 상장회사를 포함함)에 속해 있거나 또는 금융 유동성 한도(banking liquidity line)로부터 이익을 얻는 유동화 기구의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일 것.

(6) (i) 펀드는 매수시 펀드가 어느 발행회사 유가증권 종목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매수의 결과 위탁회사가 발행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동 발행회사의 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ii) 나아가, 펀드는 이하 비율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10%
- 합병이나 결합과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의 25%
- 동일 발행 기구의 단기금융상품의 10%

상기한 제한에 따라 부여되는 한도는 만일 취득 당시 단기금융상품이나 채무증권의 총액 또는 발행증권의 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시점에서 무시될 수 있다.

- (iii) 다만 (i)호 및 (ii)호에서 명시하는 이러한 한도는 (i) 회원국, 그 지방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 또는 1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가입한 공공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OECD회원국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ii)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된 회사의 자본주식을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그 자산을 주로 위 국가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발행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위 국가의 법률상 이와 같이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이 펀드가 위 국가의 발행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그리고 당해 회사가 그 투자방침에 있어서 법 제43조 및 제46조 그리고 제4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부여하는 한도를 준수하는 경우, (iii) 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른 수익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오로지 해당 투자회사(들)를 대신하여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관리, 자문 및 마케팅 사무만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의 자본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들)의 주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7) 펀드는 포트폴리오 증권의 처분과 관련하여 펀드가 관련 증권법에 따라 인수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발행인의 유가증권을 인수하거나 하인수할 수 없다.
- (8)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펀드는 다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가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 회원국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directive 2009/65/EC에 따라 인가된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및/또는 directive 2009/65/EC 제1조 (2)항의 첫번째와 두번째 항의 의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유럽공동체 법에서 부여하는 바에 상응하는 감독을 따르고 관계당국들 간의 협조가 충분히 보장될 것을 규정하는 법에 따라 인가되어야 함.
 - 집합투자기구 수익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회원국에서 등록되는 양도성 증권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보호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특히 자산 분리, 차입, 대출 및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의 담보되지 아니한(uncovered) 매각에 관한 규정이 directive 2009/65/E에서 정한 요건에 상응하여야 함.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가 반년마다 보고되고 보고대상기간 동안의 자산, 부채, 수입, 영업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연차보고서가 보고되어야 함.

- 취득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상이 그 설립문서에 의거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에 투자되지 않을 것. 그리고,
- 펀드는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10% 이상을 위에서 명시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나 주식에 대하여 투자할 수 없다.

펀드가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다른 집합투자기구 혹은 위탁회사 또는 위탁회사와 공동의 경영이나 지배 또는 상당한 직·간접적인 지분보유에 의하여 연계되는 기타 회사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위탁을 통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에 투자하는 경우, 위탁회사 또는 위 회사는 전술한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인수나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 (9) 펀드는 다음 제한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옵션을 거래할 수 없다.
- (i)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별 매수 및 콜옵션의 인수는 이의 행사시 전술한 어떠한 제한들도 위반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함.
 - (ii) 펀드는 풋옵션의 만료일까지 풋옵션에 따라 획득할 유가증권의 총행사가를 지급하는데 충분한 유동자산을 펀드가 별도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풋옵션을 인수할 수 있음.
 - (iii) 콜옵션은 그러한 콜옵션의 매각이 매도초과포지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매각될 수 있음. 그러한 경우에 펀드가 다음의 상황에 따른 하락장에서 동 증권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펀드는 펀드가 부여한 해당 콜옵션의 만료일까지 해당 포트폴리오 내에 기초증권을 보유하여야 함.
 - (가) 펀드가 언제든지 포지션을 담보(cover)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충분히 유동적일 것.
 - (나) 당해 매각 옵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총행사가는 각 해당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증권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되거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한, 어떠한 옵션도 매입 또는 매도되지 아니할 것. 다만, 옵션의 획득 직후에 펀드가 보유한 모든 옵션의 총매입비용(지급프리미엄 기준)은 각 해당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10) 펀드는 통화리스크를 헷지(hedge)할 목적으로 각 해당 포트폴리오의 특정 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 및 기타 보유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선도통화계약 또는 통화선물을 보유하거나 통화옵션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이 펀드에 더

유리한 경우, 펀드는 또한 (동일 상대방을 통하여 체결된) 크로스 거래(cross transaction)를 통하여 해당통화를 매입하거나 동일 한도내에서 통화스왑을 체결할 수 있다. 펀드가 우량 금융기관과 통화선물계약 또는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계약은 증권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되거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 (11) 펀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가지수옵션을 거래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 증권 가치 변동리스크를 헷지할 목적으로 펀드는 당해 포트폴리오를 대리하여 주가지수 콜옵션을 매도하거나 주가지수 풋옵션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주가지수옵션에 포함된 기초증권의 가치는 동일한 목적으로 체결된 금융선물계약의 약정금액과 합하여 해당 포트폴리오 자산 중 헷지할 부분의 총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펀드는 주로 시장간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 있어서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중대한 시장의 진전을 예상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지수 콜옵션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가지수옵션에 포함된 기초유가증권의 가치는 구속받지 않는 현금보유금, 단기부채증권 및 예정가격으로 처분될 증권 또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담보된다.

주가지수 선물옵션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다만 장외거래가 펀드에 더 유리하거나 필요한 특성을 지닌 시세가 형성된 옵션을 입수할 수 없을 경우, 펀드는 금융상품의 장외옵션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는 그러한 종류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높이 평가되는 상대방과 거래되어야 한다. 나아가, 헷지 이외의 목적으로 펀드가 매입한 증권에 대한 옵션 및 이자율선물옵션과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옵션의 총매입비용(지급프리미엄 기준)은 각 해당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12) 펀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율선물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율옵션을 거래하거나 이자율스왑거래를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치변동 리스크를 헷지할 목적으로, 펀드는 이자율선물을 매도하거나 이자율 콜옵션을 매도하거나 이자율 풋옵션을 매입하거나 이자율스왑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 또는 옵션은 당해 포트폴리오 자산이 표시된 통화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다만, 이자율스왑거래는 우량 금융기관과 사계약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단기 또는 장기 시장간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 있어서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대한 시장의 진전을 예상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는 단기 투자에 대한 장기적 익스포저를 부여하기 위하여 펀드는 이자율선물매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율선물 콜옵션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항상 구속받지 않는 충분한 현금보유금, 단기부채증권이나 예정가격으로 처분될 증권 또는 금융상품이 그러한 선물포지션 및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위하여 매입된 이자율선물 콜옵션에 포함된 기초유가증권가격 양자의 기초엑스포저를 매치(match)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이자율 선물옵션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다만 장외 거래가 펀드에 더 유리하거나 필요한 특성을 지닌 시세가 형성된 옵션을 입수할 수 없을 경우, 펀드는 금융상품의 장외옵션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는 그러한 종류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높이 평가되는 상대방과 거래되어야 한다. 나아가, 헷지 이외의 목적으로 펀드가 매입한 증권에 대한 옵션 및 이자율선물옵션과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옵션의 총매입비용(지급프리미엄 기준)은 각 해당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13) 펀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주가지수선물을 거래하여서는 안된다.

포트폴리오 자산가치의 변동리스크를 헷지할 목적으로 펀드는 당해 자산 해당부분의 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초과하지 않는 주가지수선물매도계약에 대하여 당해 포트폴리오를 대리하여 미결제 약정을 보유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시장간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 있어서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중대한 시장의 진전을 예상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 펀드는 주가지수선물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포트폴리오가 소유한 구속받지 않는 충분한 현금보유금, 단기부채증권이나 예정가격으로 처분될 증권 또는 금융상품이 그러한 선물포지션 및 동일한 목적으로 매입된 주가지수 콜옵션에 포함된 기초유가증권가격 양자의 기초엑스포저를 매치(match)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나아가, 모든 당해 주가지수선물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 (14) 펀드는 우량 금융기관의 은행보증 형식이나 현금 또는 OECD회원국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 담보의 형식으로 적절한 담보물의 수령과 교환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투자자산을 대여할 수 없다. 공인된 청산소나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우량 금융기관을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포트폴리오 유가증권 가

치의 절반 이상에 대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어떠한 유가증권대여도 이루어질 수 없다.

- (15) 펀드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으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회사에는 투자할 수 있다.
- (16) 법률에 정의된 내용과 관련한 2008년 2월 8일 자 대공국 규정 제9조 및 UCITS의 투자자격자산에 관한 유럽증권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 “CESR”)의 지침과 관련한 2009년 2월 19일 자 CSSF 회람 08/339에 기재된 기준을 준수하여, 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거나, 상품에 투자 혹은 거래하는 회사의 유가증권 및 상품에 의하여 담보되는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펀드는 상품, 상품계약 또는 상품(merchandise)이나 상품에 대한 권리(rights to merchandise)를 표창하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거래를 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적의 상품은 귀금속을 포함한다.
- (17) 펀드는 (포트폴리오 유가증권 매매의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단기신용을 획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거래로 여하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없으며, 선물 및 선도계약(및 그에 따른 옵션)과 관련하여 최초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예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가증권을 공매도하거나 매도초과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다.
- (18) 펀드는 언제든지 포지션 위험 및 동 위험이 각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위험 프로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니터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펀드는 반드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펀드에 의해 사용된 기술 및 기법에 기반한 여하한 운용으로 인해 펀드가 투자설명서에 자세하게 명시된 바와 같은 포트폴리오의 투자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펀드는 각 포트폴리오의 파생상품과 관련한 총 위험평가액이 해당 포트폴리오의 순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평가액은 기초 자산의 현재 가치, 거래상대방 위험, 선물시장 동향 및 포지션의 청산 가능 시한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이는 다음 조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펀드는 금융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은 합산하여 투자제한 제(4)항에서 정한 투자제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펀드가 지수에 기초한 금융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투자는 투자제한 제(4)항에서 정한

한도와 합산될 필요가 없다.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후자는 반드시 본 투자제한 제(18)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때 고려되어야 한다.

- (19) 펀드는 현금결제상품을 포함하여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파생상품 또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을 따라야 한다.
- 기초자산은 포트폴리오가 그 투자목적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2002년 12월 20일자 법 제41(1)조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금융지수, 금리, 환율 또는 통화로 구성될 것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상대방은 신중한 감독을 받는 기관 및 룩셈부르크 감독당국에 의해 승인된 범주에 속하는 기관일 것
 - 장외파생상품은 매일 기준으로 신뢰할만하고 검증가능한 평가를 받으며, 펀드의 전략에 따라 언제든지 그 공정가에 따른 상쇄거래로 종결할 수 있을 것.
- (20)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규정에 제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각 포트폴리오는 어느 UCITS 또는 그 UCITS의 포트폴리오(“모펀드”)의 자펀드(“자펀드”)로 행위할 수 있다. 이때 모펀드는 그 스스로 자펀드이거나 자펀드의 수익권/주식을 보유하고는 않된다. 포트폴리오가 자펀드가 되는 경우 자펀드는 최소한 자산의 85%를 모펀드의 주식/수익권에 투자한다.

자펀드는 다음 자산의 하나 이상에 자산의 15%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가) 법률 제41조(2)항2목에 따른 부수적인 유동자산

(나) 법률 제41조(1)사)항, 제42조(2)항 및 (3)항에 따라 오직 헷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파생금융상품

자펀드로서 자격을 갖춘 포트폴리오가 모펀드의 주식/수익권에 투자하는 경우 모펀드는 모펀드의 주식/수익권에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계정에 판매 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가 자펀드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자펀드 및 모펀드의 총 비용뿐만 아니라 모펀드의 주식/수익권에의 투자함으로써 자펀드가 지불해야 할 모든 보상 및 비용 변상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포트폴리오 투자설명서의 관련 항목에 공시된다.

(21)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하나 이상의 포트폴리오(“피투자포트폴리오”)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예정인 주식을 매입, 취득 및/또는 보유할 수 있다.

- 피투자포트폴리오는 피투자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는 투자할 수 없다.
- 매입이 예정된 피투자포트폴리오의 자산의 10% 이상을 다른 펀드의 수익권에 투자할 수 없다.
- 어떠한 경우에도, 포트폴리오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가치는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 순자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상 펀드의 순자산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 포트폴리오와 피투자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운용/판매 또는 환매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위탁회사의 이사회는 법률 제42(3)조에 따르며 투자설명서에 공시된 바와 같이 위의 (9)항에서부터 (13)항까지의 투자제한을 수시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위탁회사가 펀드 자산을 구성하는 양도성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제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펀드 자산의 가치 변동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기 투자제한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유가증권 처분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러한 위반 사항 시정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주식이 판매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시로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제한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투자설명서에 달리 제시되는 경우, 펀드는 EC Directive 2009/65/EC에 명시된 투자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에 기재된 투자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7. 주식의 발행

펀드의 수개 클래스의 주식은 위탁회사가 수시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 주금을 보관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포트폴리오 별로 위탁회사에 의하여 발행된다. 단주는 위탁회사가 정하는 단위까지 발행됩니다.

위탁회사는 증권의 출자가 위탁회사가 추구하는 정책과 일치하고 관련 포트폴리오의 투자목적 및 정책 또는 펀드의 투자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그 재량에 따라 주식대금으로 증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보고서는 현물 출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여하한 보고서의 발행과 관

련한 비용 및 현물 청약과 관련한 비용은 동 지불 방식을 선택한 청약자 또는 펀드의 측정가능한 이득(quantifiable benefits)이 해당 감사보고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펀드가 부담한다.

위탁회사는 등록된 주식만을 발행한다. 주식 보유에 대한 확인서는 위탁회사가 교부하나 단, 그에 따른 지급은 보관회사가 수령한다.

위탁회사는 주식의 발행에 대하여 동 주식이 제공되고 있는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위탁회사는 언제든지 임의로 특정 국가 또는 영토에 거주 또는 설립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주식 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영구히 중지할 수 있으며 이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또한 주주들 및 펀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주식보유 금지인”). 특히, 위탁회사는 주식보유 금지인이 펀드의 주주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주식 양도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탁회사는 주식 클래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해당 주식 클래스의 주식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더욱이, 위탁회사는

- (가) 임의로 주식의 매수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 (나) 주식의 매수 또는 보유에서 제외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8. 주식의 발행가

각 클래스의 주식의 최초 주당 발행가는 최초 모집기간 동안 위탁회사가 정한다. 그 후의 주당 발행가는 주식매수신청을 수령한 날에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당해 클래스의 주당 순자산가치 (그러나 동 신청은 위탁회사가 수시로 정하는 기한 전에 수령되어야 한다)에 매수된 특정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비율로 판매수수료를 가산한 가격이 된다. 매수된 다른 주식 클래스에 대하여는 위탁회사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환매한 때에 환매대금에 대하여 조건부이연환매 수수료 또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발행가 및 (있는 경우) 판매수수료는 위탁회사가 결정한 규칙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것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한다.

9. 주권

여하한 개인 또는 법인은 이 관리규정 제6조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수개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펀드에 참가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기명식으로 주권을 발행한다. 각 주권에는 위탁회사와 보관회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양 서명은 팩시밀리로 가능하다. 주권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경우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지분확인서를 교부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순자산가치의 결정

투자설명서에서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기준 통화로 표시된 각 클래스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록셈부르크의 은행 영업일(“영업일”)에 각 주식 클래스에 적절히 배정되는 각 포트폴리오의 총 자산에서 (위탁회사가 필요하거나 신중하다고 판단하는 충당금 포함) 각 포트폴리오의 부채를 공제한 가치를 각 영업일자 미상환인 클래스 주식의 총주식수로 나누어 정한다. 위탁회사 또는 이의 지정 대리인이 기타 고려 사항들 중에 무엇보다도 거래 스프레드, 회계 수수료 및 주주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시장영향을 포함한 거래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치는 조정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각 주식 클래스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동 포트폴리오의 각 주식 클래스에 부과되는 서로 다른 수수료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투자수익, 미지급이자, 수수료 및 기타 채무 (위탁보수를 포함함)는 일일 기준으로 발생한다. 발행 및 환매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당해 순자산가치는 펀드의 판매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통화로 전환된다.

펀드의 계정으로 위탁회사는 포트폴리오들을 다음과 같이 설립한다.

- (가) 특정 클래스의 주식의 발행으로 수령하는 대금은 펀드의 장부상에 그 클래스의 주식을 위하여 설립된 포트폴리오에 충당되며 경우에 따라 당해 금액은 발행 예정인 주식의 클래스에 기하는 당해 포트폴리오의 순자산 비율을 증가시킨다. 또한 각 클래스(들)에 기하는 자산 및 부채, 수익 및 지출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포트폴리오에 충당된다.
- (나) 어느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우 그 파생된 자산은 펀드의 장부에서 동 자산이 파생된 자산과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충당되며 여하한 자산의 재평가시 가치의 증감은 당해 자산 풀로 충당된다.
- (다) 특정 포트폴리오의 자산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자산과 관련하여 취해진 행위와 관련된 채무를 펀드가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는 당해 포트폴리오에 배정된다.
- (라) 펀드의 자산 또는 부채가 특정 포트폴리오에 귀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 또는 부채는 당해 클래스의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비례하여 모든 포트폴리오에 배정된다.
- (마) 특정 클래스 비용이 지급되고/또는 높은 비율의 배당금이 어느 특정 클래스의 주식에 분배되는 경우 당해 클래스의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그 지급된 비용만큼 및/또는 다른 클래스의 주식의 소지인들에 지급된 배당금을 초과하는 어느 한 클래스의 주식의 소지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초과금만큼 감소한다. (그러므로 펀드 또는 경우에 따라 당해 클래스의 주식에 귀속하는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 총액의 비율은 감소한다). 다른 클래스의 주식에 귀속하는 순자산가치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러므로 펀드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클래스의 주식에 귀속하는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 총액의 비율은 감소한다)

- (바) 있는 경우 특정 클래스의 자산이 단일 클래스에만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경우 및/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자산이 동일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발행된 주식의 수개의 클래스에 귀속하는 경우 포트폴리오의 당해 클래스의 주식은 그 출자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 (사) 주식이 발행 또는 환매될 때마다 당해 클래스의 주식에 귀속하는 공동 포트폴리오의 주식은 펀드가 그러한 발행 또는 환매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수령 또는 지급한 금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한다.

펀드는 기존의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추가 클래스의 주식을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포트폴리오의 각 추가 클래스의 주식은 처음에는 펀드가 이미 수령한 총발행가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최초 모집시 포트폴리오에 투자되며 포트폴리오의 기존가치를 갖는다.

위에 명시된 배분 규칙은 또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자산 및 부채의 배분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적용가능하다.

위탁회사는 각각의 투자분야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펀드의 포트폴리오 전체 혹은 일부(이하 “참가 포트폴리오”)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확대된 자산 풀(“자산 풀”)은 참가 포트폴리오 각각으로부터 현금 혹은 (아래 언급된 한도에 따른) 기타 자산을 자산풀로 양도함으로써 최초로 형성된다. 이후, 위탁회사는 수시로 자산 풀과 해당 참가 포트폴리오 간에 추가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현금을 제외한 자산은 당해 자산풀의 투자분야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에만 자산 풀로 배정될 수 있다.

각 참가 포트폴리오가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자산 풀의 자산은 당해 참가 포트폴리오가 행한 자산의 할당 및 인출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자산 풀의 자산에 대하여 수령하는 배당금, 이자 및 기타 수입의 배분은 이의 수령 시 각 참가 포트폴리오가 자산 풀의 자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에 비례하여 즉시 참가 포트폴리오의 계정으로 계상된다. 자산 풀은 주주들의 법적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시가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보유 유가증권의 시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 (가) 어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평가일인 해당 영업일 현재 동 증권거래소의 폐장 시점에 consolidated tape에 반영된 최종 매도가격으로 평가된다. 해당 일에 매도 주문이 없었을 경우, 유가증권은 당일 최종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의 평균치로 평가된다. 해당 일에 매수호가나 매도호가 없었을 경우, 유가증권은 위탁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회사가 선의로서 정한 공정가격으로 평가된다.
- (나) 하나 이상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주요 거래소를 참

조로 하여 (가)항에 따라 평가된다.

- (다) 발행시장이 장외시장이라 여겨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을 포함하여 (The Nasdaq Stock Market, Inc.("NASDAQ")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제외)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현재 환매가격 및 청구가격(askd price)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 (라) NASDAQ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NASDAQ 공식 종가(Official Closing Price)에 따라 평가된다.
- (마) 포트폴리오가 매입한 풋옵션이나 콜옵션은 최종 매도가격으로 평가된다. 해당일에 매도 주문이 없었을 경우, 유가증권은 당일 최종 매수호가로 평가된다.
- (바) 미결제 선물 계약과 및 그에 대한 옵션은 최종 결제가격으로 평가되며, 그러한 결제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공시된 매수호가로 평가된다. 평가일에 입수가 가능한 호가가 없었을 경우에는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의 최종 결제가격으로 평가된다.
- (사) 잔여 만기가 60일 이하인 미국 정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는 시가가 이용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가격결정업체에 의해 시가로 평가된다. 시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증권은 취득원가를 상각하여 평가한 방법(amortized cost)에 따라 평가된다. 이 방법은 원래의 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 단기 증권뿐만 아니라 원래의 만기가 60일 이하인 단기 증권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상각원가(amortized cost)를 활용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활용하고자 하는 상각원가(amortized cost)가 증권의 공정가격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위탁회사가 고려할 요인들로는 발행인 신용도의 하락 또는 금리의 현저한 변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 (아) 채권은 주 시장 조성자가 제공한 가장 최근의 매수호가를 반영합니다.
- (자) 저당증권과 유동화증권은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입수한 가격 또는 동 유가증권의 시가를 반영하고 해당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1인 이상의 주요 브로커-딜러로부터 입수한 가격이 해당 증권의 공정시가를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증권의 시가를 반영하는 동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브로커-딜러로부터 시세를 입수한 경우 위탁회사는 최근 입수한 해당 유가증권의 매수호가를 매일 조정할 목적으로 시장 수익률이나 가산금리의 변동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 (차) 장외파생상품 및 기타 파생상품은 해당 유가증권의 주요 브로커-딜러로부터 입수한 매수호가 또는 가산금리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 (카) 기타 모든 유가증권은 위탁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쉽게 입수가 가능한 시세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특별한 상황상 그러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위탁회사는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선의로서 기타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수권되었다.

유가증권은 시세에 근거하여 현재 시가로 평가되며 혹은 시가를 쉽게 입수할 수 없거나 시가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또한 이의 총괄적인 감독에 따라 결정된 "공정가격"으로 평가된다. 공정가격 결정절차를 활용함에 있어서 펀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펀드는 특정 유가증권과 관련된 진전상황 또는 시장지수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가증권의 가격은

동일 유가증권의 시세나 공표가격과 다를 수 있다. 공정가격 결정절차에는 상당한 판단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유가증권에 대하여 결정된 공정가격은 당해 유가증권 매각시 실현가격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증권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포트폴리오 유가증권의 경우 어느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가 조기에 폐장되거나 특정 유가증권의 거래가 중지되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공정가격 결정절차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 이외 지역의 시장의 경우 펀드의 유가증권 평가시점 보다 훨씬 이전에 폐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공정가격 결정절차가 더욱 자주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장의 폐장시간과 해당 유가증권 평가시점 사이에 광범위한 시장변동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펀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제3자 판매인의 모델링 기법에 기한 공정가격 결정절차를 활용하여 여러 아메리카 외 증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공표된 이전 가격과 마찬가지로 공정가격 평가절차를 활용하여 산정된 포트폴리오 유가증권의 가격은 당해 유가증권 매각시 실현가격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목적상 포트폴리오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과 부채는 해당하는 거래시장의 정규 참여자인 주요 은행이 최근 공시한 포트폴리오 통화 대비 해당 통화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의 평균치에 기하여 또는 그러한 여러 주요 은행이 제공한 시세를 고려하여 산정된 가격결정정보에 기초하여 포트폴리오 통화로 환산된다. 뉴욕증권거래소 폐장 시점 현재 그러한 시세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의로서 또는 이사회 재량에 따라 환율을 결정한다.

특별한 상황상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또는 위탁회사가 펀드의 수익자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다고 정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되는 바와 같이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선의로서 기타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수권되었다.

11. 순자산가치의 결정의 정지

위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식의 교환, 환매 및 교환을 중지할 수 있다.

- 펀드 자산의 중요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수개의 증권거래소 또는 시장 또는 펀드 자산의 중요 부분이 표시되는 통화의 외국환시장이 일반 휴일이 아닌 때에 폐장하거나 위 증권거래소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
- 정치, 경제, 군사 또는 금전적 사유로 또는 위탁회사의 책임 및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포트폴리오의 자산의 처분이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포트폴리오의 투자평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수단이 고장난 경우 또는 어떠한 사유로든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치가 요구된 바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교환제한 또는 자금의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제한의 결과 펀드를 대신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펀드의 자산의 매수 및 매각이 정상적인 환율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 자펀드의 경우 모펀드 순자산가치의 산정이 중단되는 경우.

12. 환 매

환매는 환매청구를 수령한 영업일에 제10조에 따라 결정되는 당해 클래스의 주당 순자산가치에서 (있는 경우) 주식의 판매대행을 위탁한 기관에 지급되어야 하는 해당 환매수수료 또는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조건부이연판매 수수료를 뺀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청구는 위탁회사가 수시로 정하거나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기간 전에 수령되어야 한다. 그러한 환매청구는 (발행된 경우) 당해 주권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주주에 의해 요청된 경우, 환매는 위탁회사의 재량으로 현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물 환매와 관련한 비용(주로 감사보고서의 기재와 관련한 비용)은 동 환매방식을 선택한 주주 또는 펀드의 측정가능한 이득(quantifiable benefits)이 해당 감사보고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펀드가 부담한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내에서, 현물환매는 (항상 온전히 펀드를 고려하여 및/또는 펀드의 이익을 보호하며)통상 펀드에 의해 보유되는 모든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위탁회사는 펀드가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여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펀드의 주식의 환매가 주주들이 요청하는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환매대금은 환매청구를 수락한 날부터 (당일 포함) 록셈부르크의 5영업일 전에 주권(발행된 경우)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다.

보관회사는 외환관리규정 등 법률상의 규정 또는 기타 보관회사의 통제 밖의 상황이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국가에 환매대금 지급금의 이체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위탁회사는 (i) 펀드가 어느 영업일에 그 영업일 현재 미상환 주식의 10% 이상에 대하여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것 및 위탁회사에 의해 수시로 고정되는 더 낮은 비율로 환매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ii) 자펀드의 투자 대상인 모펀드가 자신의 주식을 안분하여 환매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주식의 환매를 제한할 수 있다. 위탁회사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의 이러한 권한의 행사로 효력을 잃게 되는 환매청구의 일부는 (위탁회사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과 관련하여) 원 환매청구가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익영업일 및 차후 영업일에 대하여 마치 그 청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된다.

환매요청의 결과로 어느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주식이 판매문서에서 정하는 최소보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상기 요청을 당해 주주가 펀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에 대한 환매 요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13. 전 환

위탁회사에 청구하는 즉시 각 클래스의 주식은 전환일 현재의 각 순자산가치를 참조하여 결정하는 비율로 미상환인 다른 클래스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위탁회사는 펀드의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한사항에 따라 또는 비용 및 수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14. 펀드의 제수수료 및 비용

펀드는 다음 수수료를 부담한다.

- 펀드의 재산 및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주주가 (1) 미국 (또는 기타 적용 국가) 및 (2) 투자자의 과세 거주지국 간의 이중과세조약상 혜택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또는 기타 적용) 원천징수세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오.);
- 보관회사가 부담하는 합리적인 지출 비용 및 현금지출비용 (전화, 텔렉스, 케이블 및 우편료를 포함함) 및 펀드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보관회사보수;
- 펀드의 포트폴리오 보유 유가증권이 관계된 거래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은행수수료 (동 수수료는 취득가에 포함되며 매각대금에서 공제됨);
- 투자설명서에 따른 부록 A에 명시된 바와 같은 위탁회사의 보수;
- 보관회사 및 기타 보관회사가 펀드 자산의 보관을 위탁한 은행 및 금융기관, 일반사무 대리인 및 등록지에서의 이의 대리인의 보수. 동 보수는 펀드의 순자산의 일정 비율 및/또는 확정금액으로 한다.
- 펀드의 순자산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거나 동 수수료와 관련된 클래스의 총주식의 순자산가치의 비율로 결정되는 판매대행보수(distribution fee) 및 수수료.
- 순자산에 대한 비율로 누진적으로 결정되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보수 및 현금지출비용; 그러나 소정의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매달 지급된다.
-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동안 위탁회사 또는 보관회사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
- 주권 인쇄 비용, 관리규정 및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투자메모를 포함한 기타 펀드에 관한 문서들을 준비하여 펀드 또는 펀드 주식의 모집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당국 (당해 국가의 증권업협회를 포함함)에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어느 관할지에서 펀드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를 위하여 이에 대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주식의 실질적인 소지인을 포함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언어로 된 연차 보고서, 반기 보고서 및 적용 법률 또는 상기 당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문서들을 준비하고 배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일일 순자산가치의 계리, 부기 및 산정에 소

요되는 비용; 주주에 대한 공고의 작성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 비용 및 회계감사인 비용;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주식의 상장 및 상장 유지 비용; 룩셈부르크에서의 연 등록비용; 위탁회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식의 판매대행회사 또는 딜러들이 일상적인 업무 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기 문서들 또는 보고서의 복사 비용을 포함하여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대행에 직접 소요된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관리 비용.

재발생 비용은 우선적으로 수익, 그 다음으로는 양도소득, 그 다음으로는 자산에 대하여 부과된다. 기타 부담금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상각될 수 있다.

미국 원천징수세. 미국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부과하는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특별 지정된 회계상 투명한 주식 클래스의 주주가 미국 및 주주의 과세 거주지국 간의 이중과세조약상 감면된 세율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원천징수세는 관련 이중과세조약상 해당 주주에게 적용되는 비율로 해당 소득이 할당되는 주주의 주식에서 공제된다.

비미국 원천징수세. 미국 이외의 국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발행인의 증권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부과하는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특별 지정된 회계상 투명한 주식 클래스의 주주가 해당 비미국 국가 및 주주의 과세 거주지국 간의 이중과세조약상 감면된 세율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원천징수세는 관련 이중과세조약상 해당 주주에게 적용되는 비율로 해당 소득이 할당되는 주주의 주식에서 공제된다.

15. 회계연도 및 감사

펀드는 매년 8월 31일에 결산한다. 펀드의 결함 회계는 미달러화로 기록한다.

위탁회사의 회계는 위탁회사가 선임하는 감사들이 감사한다.

또한 위탁회사는 펀드의 자산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수권 감사를 정한다.

16. 배당금

배당금은 투자설명서에서 위탁회사가 정하는 금액을 위탁회사가 정하는 주식의 클래스(들)에 대하여 선언할 수 있다. 배당금 지급기일은 펀드의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투자설명서(prospectuses) 또는 투자메모(explanatory memorandums)에 명시되어 있다.

펀드의 순자산이 법률에 따라 규정된 최저 1,250,000 유로 이하로 되는 경우 어떠한 배당금도 분배되지 않는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의 소멸로

인한 배당금은 펀드에 귀속한다.

17. 관리규정 개정

위탁회사는 보관회사의 승인에 따라 언제든지 관리규정의 전부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은 달리 관리규정을 수정하는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룩셈부르크 상업등기소 (Registre de Commerce et des Sociétés de Luxembourg)에 수정본을 예치한다는 통지를 메모리알紙, Recueil Spécial des Sociétés et Associations of Luxembourg에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8. 공시

순자산가치, 발행가, 주당 환매가는 룩셈부르크 위탁회사와 보관회사의 등기사무소에서 입수할 수 있다.

주주들은 위탁회사, 보관회사 및 지급대리인의 등기 사무소에서 펀드의 감사된 사업보고서 및 미감사 반기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다.

펀드 해산을 비롯한 관리규정 수정본이 룩셈부르크 상업등기소에 예치되었다는 통지는 메모리알紙에 공고된다.

개정 내용과 주주에 대한 통지는 위탁회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펀드 주식 모집, 매출되는 국가의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9. 펀드의 존속기간, 청산 및 합병

펀드의 존속기간은 무한하다. 펀드는 위탁회사에 의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다. 해산통지는 메모리알紙 및 적절한 보급지역을 가지는 2개 이상의 신문(이 중 최소 1개 신문은 위탁회사와 보관회사가 공동으로 결정한 룩셈부르크 신문이어야 함)을 통해 공고된다.

주식 발행 및 환매는 해산을 야기시키는 결정이나 사유 발생시 중단된다.

위탁회사는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펀드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보관회사는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산수수료 및 청산비용을 공제한 후 보유중인 해당 주식 클래스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해당 주식 클래스에 따른 순청산대금을 분배한다.

펀드 청산이나 분할은 주주나 그 상속인이나 수익자들에 의하여 요청될 수 없다.

포트폴리오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위탁회사가 최소 수준으로 정한 금액까지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한 경우 또는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위탁회사는 펀드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포트폴리오를 해산하기로 유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는 각 클래스 주식의 보유자에게 당해 클래스의 총순자산가치를 환불한다. 그러한 행위는 펀드 해산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회사에 의하여 공고되며, 대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자들에게 분배되지 못한 환불대금은 포트폴리오를 해산하고자 하는 위탁회사의 이사회 결정 이후 9개월 이내에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공탁국에 예치된다.

위탁회사는 펀드 또는 어느 포트폴리오(합병 후 소멸 UCITS 또는 합병 후 존속 UCITS 여부 상관 없이)의 자산 및 부채를 (i) 펀드의 또 다른 존속 포트폴리오나 기타 룩셈부르크 또는 해외 UCITS의 또 다른 포트폴리오(“신규 포트폴리오”)의 자산 및 부채와 또는 (ii) 또 다른 룩셈부르크 또는 해외 UCITS(“신규 UCITS”)의 자산 및 부채와 합병(법률에서 정하는 의미에 따름) 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펀드 또는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해당하는 바에 따라 신규 UCITS 또는 신규 포트폴리오의 주식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은 (i) 펀드 또는 포트폴리오가 합병 후 소멸 UCITS일 경우 CSSF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하며, (ii) 법률(특히 합병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항 및 이하 문단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재매입이나 환매 또는 경우에 따라 전환 요청 최종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예정된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조항)에서 정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정된 합병에 관하여 주주들에게 통보되는 시점부터, 주주들은 자본회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펀드가 보유하는 보수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보유 주식의 재매입 또는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는 가능한 경우, 유사한 투자방침을 추구하며 위탁회사 운용하거나 또는 위탁회사가 공동 경영 혹은 지배하거나 위탁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여 위탁회사와 연계된 다른 회사가 운용하는 또 다른 UCITS의 수익권이나 주식으로 보유 주식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 제75조에 명시된대로 합병 후 소멸 UCITS의 수익권 또는 주식을 합병 후 존속 UCITS의 수익권 또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비율을 산정하는 날 5 영업일 전 소멸 된다.

합병의 준비 및 완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펀드 또는 주주들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20. 소멸시효

위탁회사나 보관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청구는 당해 청구를 일으킨 사건일로부터 5년후에 소멸한다.

21. 적용 법률, 관할법원 및 준거 언어

주주, 위탁회사 및 보관회사간에 발생한 여하한 분쟁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룩셈부르크 지방법원 관할권의 지배를 받는다. 단, 위탁회사와 보관회사는 펀드의株式이 제공되고 판매되는 국가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자신들 및 펀드가 당해 국가 법원 관할권의 지배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당해 국가에 거주하는 주주들의 청약 및 환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국가 법률의 지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관리규정의 준거 언어는 영문이다. 다만, 위탁회사와 보관회사는 그들 자신과 펀드를 대리하여 펀드의株式이 제공 및 판매되는 국가 언어로의 번역을 당해 국가에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株式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상 2015년 11월 2일자 ACMBernstein의 관리규정이다.

2개의 원본으로 체결됨.

(서 명 필)

AllianceBernstein (Luxembourg) S.à r.l

위탁회사

(서 명 필)

Brown Brothers Harriman (Luxembourg) S.C.A.

보관회사